



89th February 2016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CONTENTS

WHERE IS GRACE CHANG?

Risk Management System

COVER STORY

중국의 제조업 추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FTA NEWS

APTA 4 차 라운드 타결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79

해외 생산공장 파견직원소요비용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여부 및
과세방법

신한 소식

Stand Up! Value Up!!



ABOUT

WRITERS

WHERE IS GRACE CHANG?

Risk Management System



장승희
 대표 관세사

Delay, Delay, Cancelled, Cancelled...

지구의 온난화 현상, 느슨해진 제트기류, 이 틈을 노리고 극한한파를 품고 내려온 Polar Vortex. 이상 한파와 폭설 및 광풍으로 제주공항이 폐쇄된 지난 1 월 23 일 토요일, 공항에서 대기하다 포기하고 공항인근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TV News 와 문자메시지 및 주위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월요일 오후 항공사로부터 '기상호전으로 공항 정상운영 예정이므로 공항으로 나와 수속을 받으시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공항 인근도로의 혼잡으로 1 시간여 소요될 것이라는 안내도 첨부되었습니다. 우려와 달리 공항인근도로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교통경찰 등의 안내로 10 여분만에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항 로비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는 줄들이 엉켜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줄에 서야 하는 것인가 두리번거리며 항공사 카운터로 갔습니다. 다행히 복잡한 줄들의 끝에 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수속을 마치고 3 시간후에는 제주공항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Risk Management System 은 조직에게 닥쳐올 수 있는 다양한 위기/위험을 방지 및 축소시키는 제도/장치를 말합니다. Software 를 활용한 Risk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장치가 있고 Members 에 의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평소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미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눈으로만 아는 방안은 정작 위험 발생 시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몸에 완전히 체화되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Alcoa (Aluminum Company of America)는 자동차, 항공사 등에 알루미늄 제품을 납품하는 120 여년 역사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1987 년 새로운 CEO 가 취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CEO 들은 취임인사에서 profit margins, new markets, synergy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Paul O'Neill 은 직원들의 safety 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Alcoa 의 전국 모든 공장에서 매주 1 건이상씩 발생하던 사고를 방지하여 **사고율 제로의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특이한 CEO 에 대한 모든 사람의 우려와 달리 O'Neill 취임 1 년후 Alcoa 는 기업역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취임 이후 수년 동안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0 년 O'Neill 이 CEO 자리에서 물러날 때 연간 순이익은 취임 전보다 5 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Paul O'Neill 은 **Keystone habit** 을 찾아내고 '사고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전 직원에게 반복행동을 시켰습니다. Alcoa 성장을 가져온 시스템입니다.

이번주 Cover Story 는 '중국의 제조업 추격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며 FTA News 는 최근에 타결된 'APTA 4 차 라운드'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외에도 '관세무역관련 법령의 변경소식'과 '관세평가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알아보는 관세평가'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isk 는 항상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평상시에는 불필요해 보이며 과잉대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Delay or cancel 상황 발생시의 대기표 발급 시스템은 저가항공뿐 아니라 대형 항공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제주공항 사태가 며칠에 걸친 대혼란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위기관리방안의 부재**를 자인합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위기와 위험은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지나갑니다. 그 모든 위기를 미리 알고 사전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막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겠지요.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준비하여 고객께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Power of Habit: Charles Duhigg pp147-152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Cover Story

중국의 제조업 추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올해 세계 교역 증가세는 지난해보다 약화되어 우리나라의 성장 둔화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제조업 추격이 매섭다. 이러한 중국의 추격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중국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 위 품목 경쟁]

품목	빈도수
전자기계	4
철강	4
가죽, 고무, 신발, 여행용품	1
섬유제품	6
수송기계	2
비전자기계	3

주석: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1 위를 차지한 품목에 대한 중국의 세계수출 2 위국 빈도수

자료: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 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에 점유율 1위를 달성했던 3개 품목(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HS7219.13, 유입식 변압기 HS8504.23, 합성스테이블섬유직물 HS5512.21)이 2013년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2013년 1위 품목인 65개 중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14개 품목에서 중국이 5%대 이하의 점유율 차이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폴리 에스테르 섬유,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등 7개 품목은 중국과 2% 이하의 근소한 점유율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30년간 산업 고도화 전략 추진을 통해 제조 강국 진입을 꾀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산 제품이 고기술·고부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한국의 기술우위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2012년 대비 2014년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1.9년에서 1.4년으로 단축시켰다.

중국 기업들은 인수·합병(M&A)과 해외핵심인력 영입으로 부족한 브랜드 경쟁력과 기술력을 자금력으로 만회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기업들이 해외 업체들을 사들인 M&A 규모는 약 113조 3220억원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M&A 규모가 2012년 1조 7000억원에서 2014년 4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레노보가 미국 IBM의 PC 사업을 인수한 데 이어 2014년 IBM의 서버 부문과 모토롤라를 사들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초 칭타오하이얼이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의 가전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다른 업체가 가진 노하우를 단번에 습득하기 위하여 해외핵심인력을 영입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국내 기술자들은 물론 미국 기술자 또한 대규모로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영입 제의를



받은 국내 반도체 연구 인력은 백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1년 연봉을 3년간 9배 보장해준다는 파격적인 영입조건을 내세웠다고 한다.

한편으로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의 저서 「제로 투 원」에서는 비관주의 관점으로 중국을 바라본다. 중국이 이토록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시작지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며, 다른 모든 나라들은 중국이 전 세계를 잡아먹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를 못 잡아먹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서구에서 이미 효과가 있었던 것을 무차별적으로 베끼며 공장과 건물을 지어 올리지만, 원자재 값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중국의 생활수준이 전 세계 가장 부유한 국가들을 따라 잡을 방도가 없어 중국 국민들은 미래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와 같은 중국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도 존재하겠지만 국내산업은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비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주력 산업을 확보하여 선점하도록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혜란

hrkim@customsservice.co.kr

FTA News

APTA 4차 라운드 타결

1. APTA 4차 라운드 타결

2015년 12월 22일~2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8차 상임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은 제4라운드 협상 주요내용을 타결하였습니다.

* APTA란?

- '75년 방콕 협정(Bangkok Agreement)체결, '06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으로 명칭 변경
- 회원국 :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등 7개국

상임위에서 회원국들은 관세감축 양허안 및 개정협정문안을 확정하는 등 제4라운드 협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품목수 28%, 관세인하율 33%의 양허 수준을, 기타 회원국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도출하였고, 수출물품이 AP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산지 결정기준"도 기존에 적용되어온 부가가치기준(RVC45%) 이외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철강, 금속품,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 HS4단위 품목기준 156개(6단위 659개)에 대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요 수출품목의 원산지 증명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APTA 협정은 발효 즉시 관세가 감축되므로 일정기간(관세가 수년간 조금씩 인하되는 한-중 FTA를 보완하는 역할이 기대되며, 특히 한-중 FTA 양허제외품목 및 장기철폐품목과

비교 시 APTA 대상품목 중 상당부분은 더 유리한 관세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회원국간 협의가 마무리 되고, 2016년 4월에 개최예정인 각료회의에서 정식 서명되면, 관련 국내절차를 거쳐 2016년 내 국회 비준동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국 수출 시 유리한 '세율' 선택 필요

한편 APTA 4차 라운드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정보기술협정 (ITA)협정* 확대 타결, 최근 발효된 한-중 FTA까지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세율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WTO 협정의 일부로 첨단산업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정보기술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국가들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

얼마 전 중국 재정부는 '2016년 관세 조정 방안'을 통해 2016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국 수입상품 총 787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무역협회 북경지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입관세가 일반세율보다 인하되는 품목은 △농수산물 △소비재 △산업재 등이며, 소비재 중에서는 △가방류(15%~20% → 10%) △의류(14%~25% → 7~13%) △선글라스(20% → 6%) 등이 인하됐으며 설비 및 기기에는 △보일러 △엔진 △전동기 등이

5% 수준으로 관세가 내려갔습니다.(잠정세율)

'ITA 확대 협상'이 2015년 12월에 타결됨에 따라 과거의 ITA 협상과 비교하여 201종의 제품이 관세인하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면서 전기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내려갈 예정이며, 특히 한-중 FTA에서 중국 측이 양허를 제외한 22개 품목(HS 8단위 기준)이 이번 ITA 협상에 포함되어 해당 품목은 향후 3~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으로 수출 시 한-중 FTA 적용세율, 중국의 잠정세율, ITA 관세율, APTA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세율은 원산지증명서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한-중 FTA와 APTA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통관 시 제출하여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 4 라운드 타결, 2015.12.28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협력과 보도자료

중국 진출, 내게 맞는 '세율' 찾아야,
2016. 1. 7. 주간무역 정재림 기자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종 호

jhshin@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 월별납부업체 갱신절차 간소화,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 등 '15년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반영
-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타 고시명 변경 및 일몰기한 설정 등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제4조)

* (기존)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

년 → (변경)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 월별납부업체 지정 자동갱신 조항 신설(제7조)
 - 월별납부업체 최초 승인 신청 시 지정기간 자동 갱신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승인기간 이전에 세관장이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요건을 심하여 승인기간을 갱신하고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

-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및 서식 신설(제12조)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도 월별납부한도액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음.

* (기존) 한도액 감액조정 → (변경) 월별납부 사용 중지

3. 시행일자

2016. 1. 1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s Opinions>>

월별납부승인을 위한 수입, 납세실적 조회 기산일을 연도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하여 담보고시 규정과 일치 시켰습니다. 또한 과거 월별납부업체 승인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별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동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 갱신절차를 통해 업체의 업무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별납부업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최초 월별납부승인 신청 시 자동갱신 의사표시를 표시**하여 동 제도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 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생략 기준* 상향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신용담보·정산제도 내용 타고시로 이동 반영

* (현행) 감면세액 10만원 미만 → (개정) 감면세액 50만원 미만

2. 주요 개정내용

- 재수출조건부 감면 담보생략 기준을 50만원으로 상향
- 신용담보, 정산제도 내용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관 반영

(제3장, 제6장)

□ 가지번호를 연번 조문형식으로 정비하는 등 조문 정리

3. 시행일자

2016. 1. 1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신한's Opinions>>

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세 신청 시 담보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의 경우 담보제공을 면제 해주었습니다. 동 개정으로 담보생략 기준이 감면세액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담보제공 면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통관편의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stoms Precedent ㉔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해외 생산공장 파견직원소요비용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여부 및 과세방법

1. 사실 관계

○ 한국 내 법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원부자재 및 소모품은 국내(한국)에서 구매하여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한국에 반입하거나 직접 현지 수출함. 현지 생산공장에는 한국본사 임직원이 임가공 공장에 일정기한 순환 파견 근무 중이며, 파견직원 급여는 국내법인이 지급함

2. 쟁점

□ 한국본사 파견직원 관련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범위(쟁점 1) 및 소요비용(쟁점 2) 산정 범위

○ (쟁점 1)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 (쟁점 2) 과세가격 산출 시 파견직원 소요비용 산정 범위

3. 결정내용

□ 결정 1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수입물품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 회계상 제조원가 해당 업무 수행직원의 급여는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됨. 다만,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을 전수하기 위한 파견직원 급여는 제외

[이유]

○ 협정 제 1 조 제 1 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되어야 하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조정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협정 제 1 조에 대한 주해 제 1 호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지급액의 사례로 명시하고 있고,

- 협정 부속서 Ⅲ 제 7 호에서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 3 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한국본사 소속 파견직원은 현지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 현지법인은 한국본사 소속 파견직원에게 업무수행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무)가 있지만, 동 직원의 급여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고 있으므로 파견직원의 급여는 간접지급에 해당함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 WCO 예해 16.1(물품구입 후 수입하기 전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 제 3 호에서는 제조공정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검사만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 또한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제 5 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WTO 관세평가 교육모듈에서 수입물품 생산비용 산정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는 원자재·구성요소 비용, 원자재 운송비, 모든 인건비, 조립비용, 기계비용, 공장 감독 및 유지비용 등은 원가회계상 제조원가에 해당함

*산정가격(협정 제 6 조) = 수입물품 생산비용 + 수출국내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 수입항까지 운송관련비용

○ 따라서 제품의 제조를 위해 직접·간접으로 소비한 일체의 경제가치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원가회계상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직원의 급여를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수입물품의 총원가에는 해당하지만 수입물품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비제조원가)에 해당하는, 판매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수입물품의 제조원가(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즉 수입물품의 제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 결정 2 : 과세가격 산출 시 파견직원 소요비용 산정 범위

파견기간 중 해당직원과 관련하여 산정 가능한 구매자의 모든 비용을 합산

【이유】

○ 파견직원 소요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협정 제 8 조 제 1 항 b 호의 생산지원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므로,

- 판매자에 대한 생산지원시 가격결정 방법을 준용하여 파견직원 소요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생산지원 물품의 가격과 관련해서는 해당 물품을 생산공장에 지원하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토록 결정(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3-02-01, '13.11.21)한 바 있으므로,

- 과세가격 산출 시 파견직원 소요비용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련 없이, 파견기간 중 해당직원과 관련하여 산정 가능한 구매자의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은실

esseo@customsservice.co.kr

신한 소식

Stand Up! Value Up!!

Stand Up! Value Up!!

2016 년 신한사의 목표입니다.

1 월 신한관세법인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Stand Up! Value Up! 을 외치며 한발 앞서가는 전문가가 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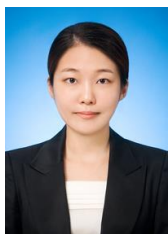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신한관세법인이 되겠습니다.



ABOUT WRITERS

COVER STORY –

중국의 제조업 추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김혜란 관세사
hr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 관세 자문 부문
- 외환 컨설팅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 원산지관리사

FTA News–

APTA 4 차 라운드 타결



신중호 관세사
j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지사
- 前 서울본사 글로벌 자문 부문
-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자문 컨설팅
-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 컨설팅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유입세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글로벌 자문 부문
- 前 인천경기지사 (수출입통관/ 환급)
- FTA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 컨설팅
-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자문 컨설팅

Customs Precedent ㉞

해외 생산공장 파견직원소요 비용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여부 및 과세방법



서은실 관세사
esse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고객관리 본부 C/S 팀
- 前 서울본사 통관본부
- 수출입 통관 및 HS 품목분류 컨설팅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